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526

발의연월일: 2022. 7. 19.

발 의 자: 박성준 • 민형배 • 양향자

이수진 • 이용빈 • 정일영

정태호 · 최인호 · 허종식

홍성국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 6억원을 공제하되,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여 주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과 주택 공시가격의 인상으로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고 있으며, 특히 현금 창출 여력이 떨어지는 고령자 등의 경우에 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를 위하여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사례도 발생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,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로서 과세표준 3억원 미만의 주택을 보유

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처분·증여 또는 상속 시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납부유예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20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본문 중 "5억원"을 "9억원"으로 한다.

제4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2(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) 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그 납세의무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·증여 또는 상속할 때까지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.

- 1. 만 60세 이상일 것
- 2. 1세대 1주택자일 것
- 3.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일 것
-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납세의무자(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가 유예된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
- 1.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2. 해당 주택을 양도·증여하거나 해당 주택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는

경우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세표준 및 납부유예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제1항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과세표준) ① 주택에 대한	제8조(과세표준) ①
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	
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	
을 합산한 금액[과세기준일 현	
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	
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	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	
주택자(이하"1세대 1주택자"라	
한다)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	
금액에서 <u>5억원</u> 을 공제한 금	<u>9억원</u>
액]에서 6억원을 공제(납세의무	
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	
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	
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	
한다)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	
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	
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	
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	
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	
곱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그	·
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	
영으로 본다.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- 제20조의2(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) 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그 납세의무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·증여 또는 상속할 때까지 그 납부를 유예받을 수있다.
 - 1. 만 60세 이상일 것
 - 2. 1세대 1주택자일 것
 - 3.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일 것
 -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 받은 납세의무자(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 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가 유예된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 하여야 한다.
 - 1.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 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- 2. 해당 주택을 양도·증여하거나 해당 주택에 대한 상속이개시되는 경우
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